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51
----------	-------

발의연월일 : 2025. 8. 13.

발 의 자 : 김민전 · 백종현 · 김정재
박충권 · 송언석 · 서지영
이인선 · 조정훈 · 정성국
나경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고등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금품수수, 부정입학, 시험문제 유출 등 이른바 ‘입시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교육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 중임에도,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

입시비리 사건은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입시비리를 포함하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감형·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범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조의2에 의하여 사면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면 등의 제한)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면·감형을 할 수 없다.

1.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52조, 제155조, 제225조부터 제239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학생 선발·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
2.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입학전형 관련 죄를 범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제43조에 따른 채용시험 관련 죄를 범한 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의2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복권의 제한) (생 략)	제6조(복권의 제한)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u>② 제9조의2에 의하여 사면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도 이와 같 다.</u>
<u><신 설></u>	<u>제9조2(사면 등의 제한)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는 사면 · 감형을 할 수 없다.</u> 1.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52조, 제155조, 제225조부 터 제239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학생 선발 ·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 2.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입학전형 관련 죄를 범 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또는 「지방공무원 법」 제42조, 제43조에 따른 채용시험 관련 죄를 범한 자 4.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 조의2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

<u>한 자</u>
